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4회 임시회(9. 2. ~ 9. 10.)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4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총 13건 : 도지사 4, 의원 9 * 제안자 구분

위 원 회	조례안명	제안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9. 10.)
기획행정 위 원 회 (3)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	원안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병석 의원	수정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영섭 의원	
사회문화 위 원 회 (4)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	원안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태연 의원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농림수산 위 원 회 (3)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연 의원	수정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박인균 의원	원안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도지사	수정
경제건설 위 원 회 (2)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수정
교 육 위 원 회 (1)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영미 의원	수정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9. 10.(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퇴직예정자 포함)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구),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철원2),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무소속·강릉1),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횡성1),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2),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자율방범대”란 도내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바꾸고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석 의원



김규호 의원



한금석 의원



김경식 의원



반태연 의원



심영섭 의원



한창수 의원



박병구 의원



이병헌 의원



안미모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무소속·강릉1)
- 공동발의: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신영재 의원(경제건설위원회·국민의힘·홍천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발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가이드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영섭 의원



김병석 의원



신영재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홍천2)
- 공동발의: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2),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철원1)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동해1)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비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안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도지사가 관계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도현 의원



박상수 의원



최재연 의원



심상화 의원



심영미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실태조사 및 교육,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학대 장애인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탁변호사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학대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운영과 정착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철원1)

■ 공동발의: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국민의힘·홍천2),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2)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정의를 추가 하였다. 또한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으로 규정하였다.



최재연 의원



신도현 의원



신명순 의원



김준섭 의원



박상수 의원

▣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 공동발의: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양)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구)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발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가이드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인균 의원



김정중 의원



김규호 의원



조형연 의원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하천법」이 조례에 위임한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수사용료의 분류 기준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수의 사용, 토석·사력의 채취 등이다. 개정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이 1건에 2,000원 미만일 경우 없던 것으로 하던 것을 1건에 5,000원 미만일 경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 공동발의: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삼척2)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국민의힘·철원1)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강원도 학생들의 애향심과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필요한 학교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향토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 됐다.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은 강원도 시·군 교육지원청장이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등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영미 의원



박상수 의원



최재연 의원



김혁동 의원